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88
----------	----

提出年月日：1992. 1. 13.

提 出 者：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91.12.31 地方自治法の改正에 따라 議會事務局의 名稱을 變更 하고, 議會의 圓滑한 運營을 위한 人力補強을 위하여 事務局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를 變更코자 함.

2. 主要骨子

가. 條例中 “事務局”을 “事務處”로, “事務局長”을 “事務處長”으로 變更하고자 함.(案, 題名, 第1條, 第2條, 第3條, 第4條)

나. 事務局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를 35名에서 44名으로 變更 하고자 함.(案 第4條)

다. 他條例의 改正：本條例 改正과 關聯하여 大田直轄市 議會 委員會 條例 및 大田直轄市 議會 公印條例中 改正內容을 附則에 規定코자 함. (業, 附則第2條)

3. 參考事項

가. 關聯法律改正

- 改正法律名：地方自治法 第82條
- 內容：市·道議會의 “事務局”을 “事務處”로, “事務局長”을 “事務處長”으로 改正
- 公布年月日：1991. 12. 31(法律第4464號)

나. “議會事務局”機能補強 承認

- 承認年月日 : 1991. 12. 28
- 承認 機關 : 內務部
- 承認 內容 : 事務局 定員 9名 增員
  - 行政 또는 別定4級 : 2名
    - ┌ 豫決委員會 專門委員 : 1名
    - └ 運營委員會 專門委員 : 1名
  - 行政7級 : 4名
  - 技能職 : 3名(速記士 : 2名, 助務 : 1名)
  - 職級調整 : 行政,別定 7級 1名 → 行政,別定5級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대전직할시 의회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제1조(목적)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제2조(직무)중 “사무국은”을 “사무처는”으로 한다.

제3조(조직)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35명”을 “44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조례의 개정) ① 대전직할시 의회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호 나 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② 대전직할시 의회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 제2항 제3호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2. 제4조 별표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3. 제5조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4. 제6조중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5. 제8조 제1항 및 제2항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 新舊條文對照表

現 行	改 正
<p>대전직할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p>	<p>----- 사무처 ----- -----</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사무처(--- "사무처"----- )----- ----- -----</p>
<p>제2조(직무)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회의와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p>	<p>제2조(직무) 사무처는 ----- ----- -----</p>
<p>제3조(조직)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 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제3조(조직) ①사무처----- 사무처장 -----, ----- ② 사무처장 ----- ----- -----</p>
<p>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35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대전직할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처 ----- ----- 44명 ----- ----- -----</p>

現 行	改 正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타조례의 개정) ① 대전직할시 의회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제2항 제4호 나 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p> <p>② 대전직할시 의회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 제2항 제3호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li> <li>2. 제4조 별표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li> <li>3. 제5조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li> <li>4. 제6조중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li> <li>5. 제8조 제1항 및 제2항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li> </ol>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1992年 1月 25日

內 務 委 員 會

###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出者 : 1992年 1月 13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2年 1月 14日

다. 上 程 日 字 : 第8回 大田直轄市 議會(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1992年 1月 22日)  
上程, 審議

###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企劃管理室長)

가. 提案理由

'91. 12. 31 地方自治法의 改正에 따라 議會事務局의 名稱을 變更하고, 議會의 圓滑한 運營을 위한 人力 補強을 위하여 事務局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를 變更코자 함.

나. 主要骨子

- 條例中 “事務局”을 “事務處”로, “事務局長”을 “事務處長”으로 變更하고자 함.(案, 題名, 第1條, 第2條, 第3條, 第4條)
- 事務局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를 35名에서 44名으로 變更하고자 함. (案, 第4條)
- 他條例의 改正 : 本條例 改正과 關聯하여 大田直轄市 議會 委員會 條例 및 大田直轄市 議會 公印條例中 改正內容을 附則에 規定코자 함. (案, 附則第2條)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專門委員 : 安鍾贊)

本 條例案은 '91. 12. 31 地方自治法이 改正됨에 따라 大田直轄市 議會 事務局의 現行 名稱을 大田直轄市 議會事務處로 變更하고 議會

運營에 圓滑을 기하기 위하여 現在 35名の 事務局 人力을 44名으로 補強 配置코자 하는 事案으로 지난 91. 12. 28 內務部의 定數 承認이 이루어진 事項이며,

主要 內容으로는 豫決 및 運營委員會 專門委員으로 各1名씩과 事務職員(行政7級)4名, 技能職(速記士, 補助)3名으로 總9名の

人力이 增員되는等 現行 7級 議長室 要員 1名을 5級으로 職級을 上向 調整하는 事案인 바

이는 모두 地方自治法の 改正 및 議會 機能 補強과 關聯하여 條例를 改正하는 內容으로서 向後 地方自治 發展과 議會 運營의

圓滑한 推進을 위해 必要한 措置로 볼 수 있으며 다만, 人力配置 에 있어 現在 專門委員室에 6級 또는 5級の 人力이 없이 7級으로만

構成되어 中間 實務 調整 役割이 다소 未洽한 점을 勘案할 때, 向後이 에 대한 機能補強問題가 肯定的으로 檢討되어야 할것으로 思料됨.

한편 本 條例의 改正으로 大田直轄市 議會 規則과 大田直轄市 議會 事務局 職制 規則에 議會事務局 및 事務局長의 名稱을 議會事務處와

事務處長으로 하고 總務課와 議事課를 總務擔當官과 議事擔當官으로 改正하는 後續措置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음

5. 討論者 및 討論要旨 : 反對 討論 없음

6. 審 查 結 果 : 原案 可決

7. 體系 및 字句 整理 內容 :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